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493
----------	-------

발의연월일 : 2025. 7. 15.

발 의 자 : 김용태 · 이종배 · 박준태
서천호 · 서명옥 · 이성권
조은희 · 이달희 · 김예지
주호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정보 제공·상담 등을 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관리에 대한 기준이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운영기관 간 자격과 역량의 편차가 발생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영기관의 교육장소 및 전문인력 확보 등에 대한 법적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및 감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관리, 지정 취소 사유 등

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 39조 등).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운영기관”을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개발, 운영기관의 지정·관리 및 지정 취소”를 “개발”으로 한다.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운영기관의 지정·관리) ① 제39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상시 활용이 가능한 사무실 및 교육장소의 확보
2.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
3.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4. 그 밖에 운영인력 확보 등 운영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업무 수행과 관련한 실무경력 및 전문성

2. 전문인력의 확보 및 교육시설, 기자재 등의 구비 수준
3. 운영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4. 최근 3년 이내에 제39조의3에 따라 지정 취소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5.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법 및 능력
6. 그 밖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의 접근성 및 이용 편리성 등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운영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운영기관에 대하여 경고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기관의 지정 및 관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3(운영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

3.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5.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경고나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기관의 지정 취소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사회통합 프로그램) ① (생 략)	제39조(사회통합 프로그램) ① (현행과 같음)
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통합 프로그램 <u>운영기관</u> 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 ----- ----- ----- <u>운</u> <u>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u> <u>다)</u>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u>개발, 운영기관의 지정·관리 및 지정 취소</u> , 그 밖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 <u>개발</u> ----- ----- ----- -----.
<u><신 설></u>	<u>제39조의2(운영기관의 지정·관리)</u> ① 제39조제2항에 따른 <u>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u>

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상시 활용이 가능한 사무실 및 교육장소의 확보

2.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

3.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4. 그 밖에 운영인력 확보 등 운영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업무 수행과 관련한 실무경력 및 전문성

2. 전문인력의 확보 및 교육시설, 기자재 등의 구비 수준

3. 운영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4. 최근 3년 이내에 제39조의3에 따라 지정 취소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신 설>

5.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법 및 능력

6. 그 밖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의 접근성 및 이용 편리성 등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운영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운영기관에 대하여 경고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기관의 지정 및 관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3(운영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

3.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5.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경고나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기관의 지정 취소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